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8. 19 선고 2020가단4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

담당변호사 허선무

변 론 종 결 2021. 6. 17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3. 20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. 3. 20. 접수 제97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7. 4. 5. 및 2011. 10. 25. D와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.

나. D는 2019. 3. 20.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합계 182,000,000원, 경남 고성군 E, F, G, H, I, J, K, L, M, N, O 토지 시가 합계 184,850,000원 등 총 366,850,000원이고, 소극재산으로는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가.항 기재 신용카드 대금채무 19,534,790원 및 78,805,568원, 부동산 담보대출채무 160,000,000원, 신용대출채무 50,000,000원, 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채무 171,540,000원 등 총 479,880,358원이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D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채권 등을 포함한 채권들을 가지고 있어 이는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되고,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,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매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권홍

별지

목 록

1.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 89 평방미터
2. 위 지상
(도로명주소 : 창원시 마산회원구)
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40 평방미터
(내역 : 근린생활시설 1.80 평방미터 주택 38.20 평방미터)
목조 및 세면벽돌조 기와지붕 2층 근린생활 및 주택
1층(근린생활시설) 13.29 평방미터
2층(주택) 9.59 평방미터
3. 창원시 마산회원구 대 119 평방미터

